

의안번호	2210757
의 퇴 인	전재수 의원
회 답 일	2025. 8. 4.
추계번호	25A3258

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및 사무처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1.8억원, 2030년 74.5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59.5억원(연평균 71.9억원)으로 추계됨

- 제정안의 실태조사 등 관련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3조)	0.2	0.2	0.2	0.2	0.2	1.0	0.2
사무처 설치·운영(안 제11조)	71.6	69.2	70.9	72.6	74.3	358.5	71.7
합 계	71.8	69.4	71.1	72.8	74.5	359.5	71.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의 설치)	○ 일제강점하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'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'를 둠	의무규정
2	안 제11조(사무처의 설치 등)	○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	의무규정
3	안 제13조(실태조사의 실시 등)	○ 위원회는 실태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, 자료나 물건 감정 등을 위한 현장조사,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19조(벌칙)	○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등에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등을 신고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그 유가증권 등을 양도·양수한 자·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신고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	의무규정
5	안 제20조(과태료)	○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 (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의 설치)	○	—
2	안 제11조(사무처의 설치 등)	○	—
3	안 제13조(실태조사의 실시 등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19조(벌칙)	×	○ 미대상(재정수입의 증가)
5	안 제20조(과태료)	×	○ 미대상(재정수입의 증가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 추계함
- 본 추계는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.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-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회 대하여 지급되는 회의비 등의 비용으로 가정
 -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따른 비용은 제정안과 유사성이 있는 ‘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(이하 ‘진실화해위원회’로 함)’의 민간위원회에 대한 수당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
 - － 개최 횟수는 일제강점하의 민간재산청구권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하여 연간 4회(분기별 1회)
 - － 민간위원은 금융기관 5인 및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5인 등 10인이 될 것으로 가정
 - － 민간위원 지급수당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및 진실화해위원회의 비상임위원 회의 참석시 건당 회의비 등을 고려하여 인당 40만원으로 가정
- 사무처의 설치·운영에 따른 비용은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 운영사례를 참고로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
 - 사무처의 인력구성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원기준 81명(전문임기 및 기간제 제외)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
 - － 위원장 1명, 상임위원 2명, 고위공무원 3명, 5급 이상 26명, 6급 이하 49명
 - 인건비는 진실화해위원회 직급별 평균 인건비(2025년 예산 기준)와 동일할 것으로 가정
 - 기본경비는 「2025년도 행정안전부 확정예산설명자료」을 참고하여 인건비의 13.2%로 가정
 -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, 자산취득비는 설립 첫 해인 2026년에만 발생한다고 가정
-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(안 제3조)

-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 단가 등 산정

- (구성)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고,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은 금융기관 5인 및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등 10인이 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동 법안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행정기관의 공무원, 금융기관의 임·직원 및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
- (횟수) 일제강점하의 민간재산청구권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하여 연 4회(분기별 1회) 개최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¹⁾
- (단가)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²⁾ 및 진실화해위원회 의 지급액³⁾ 등을 감안하여 회당 4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

□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 1,600만원, 2030년 1,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8,000만원(연평균 1,600만원)으로 추계됨

- 1) 다만,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, 해외동포사,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,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,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 광범위한 과거사를 조사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, 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실태는 일제강점기로 한정되는 점을 감안

[표] 진실화해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

(단위: 회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
전체위원회	26	20	24
1소위원회	26	19	24
2소위원회	23	20	24
계	75	59	72

자료: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답변자료

- 2) 기획재정부,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, p.406.
1.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(서면심사 100,000원)을 지급하되,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로 지급 가능함
 2. 위원이 단순히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·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
- 3) 진실화해위원회가 민간위원인 비상임위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과 같음

[표]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원 회의 참석시 건당 회의비

(단위: 만원)

분과명	2022년	2023년	2024년
비상임위원 회의 참석시 회당 회의참석수당	15	15	15
비상임위원 회의 참석시 회당 안전심의비	20	20	20
2시간 이상 심의시 추가 안전심의비	5	5	5

자료: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답변자료

[표 2] 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위원회 설치 및 운영 (회의수당×인원×횟수)	16	16	16	16	16	80	16

주: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단가는 회의수당 40만원, 민간위원 10명, 회의 개최횟수 연 4회

나. 사무처 설치 등(안 제11조)

□ 사무처 설치 및 운용에 따른 비용 단가 등 산정

- (인건비)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2025년 예산 기준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원 81명(전문임기 및 기간제 제외)의 직급별 평균 인건비와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공무원 임금 평균 상승률(2.4%)을 적용하여 산정

[표 3] 진실화해위원회 인력구성 및 직급별 평균 인건비 현황: 2025년 예산 기준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위원장	상임 위원	고위 공무원	4급	5급	6급	7급
인원(A)	1	2	3	7	19	38	11
1이당 연봉액(B)	167	159	132	93	79	60	47
인건비 (=A×B)	167	318	396	651	1,501	2,280	517

주: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성과급,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된 금액. 다만, 6급 이하는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도 포함됨

- (기본경비) 기본경비는 「2025년도 행정안전부 확정예산설명자료」를 참고하여 인건비의 13.2%로 가정하며,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(자산취득비) 기관설립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2026년 1인당 자산취득비 4,981천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사무처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1.6억원, 2030년 74.3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58.5억원(연평균 71.7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사무처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인건비	59.7	61.1	62.6	64.1	65.6	313.2	62.6
기본경비	7.9	8.1	8.3	8.5	8.7	41.3	8.3
자산취득비	4.0					4.0	—
합 계	71.6	69.2	70.9	72.6	74.3	358.5	71.7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림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